

의안번호	2215995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6.4.14.
추계번호	26D013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위원후보추천위원회	25	8	25	25	8	91	1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의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 함(제2항)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의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신설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발생
 -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추천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 7명)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7명 인권위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비를 추계함
- 추계에서는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따른 회의참석수당을 추계함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안 제5조의2)

-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며, 인권위원 11명, 임기 3년이라는 점, 개정안 부칙에서 이 법 시행 이후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함
 - 현재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4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원 7명)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7명에 대해서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7명 인권위원에 대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비를 추계함
 - 후보추천위원회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7명 인권위원의 남은 임기, 각 인권위원의 임기가 3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횟수를 산정한 후, 위원후보추천위원 당 회의개최횟수는 3회로 가정함

- 회의참석수당 단가는 안건검토비 20만원, 회의참석수당 20만원 등 총 40만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함

[표 2] 위원후보추천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027~2031년

(단위: 건, 명,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건수	3	1	3	3	1	11
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위원 수	7	7	7	7	7	-
위원후보추천위원회당 회의개최건수	3	3	3	3	3	-
회의참석수당 단가	0.4	0.4	0.4	0.4	0.4	-
추가재정소요	25	8	25	25	8	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9,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위원후보추천위원회	25	8	25	25	8	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